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소다자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및 해외긴급 구호업무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외교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중유럽 외교 강화를 위하여 슬로베니아공화국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개설하면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상주 공관 개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등급 또는 6등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아프리카지역 외교 강화를 위하여 주에티오피아대사관 겸 아프리카연합대표부 정원 1명(8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9등급 1명)하고, 주재관에 중동 지역 농업 시장 진출 외교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4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주재관에 다낭지역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문화홍보 분야 주재관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15. ~ 1.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
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슬로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을 다
음과 같이 한다.

슬로베니아공화국 류블라나

별표 2의 계란의 총계 “340”을 “342”로 하고, 특정직 “70”을 “71”로 하며,
소계 “270”을 “271”로 하고, 4급 “190”을 “191”로 하며, 경찰관의 총계 “6
5”를 “66”으로 하고, 특정직 “65”를 “66”으로 하며, 농림축산관의 총계 “1
1”을 “12”로 하고, 소계 “11”을 “12”로 하며, 4급 “8”을 “9”로 하고, 같은
표 비고 1의 “아니한다. 문화홍보 분야 주재관 중 5급 정원을 제외한 주
재관은 그 직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표 비고 2의 “65명”을 “66명”으로, “42명”을 “4

3명”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총계 “1,483”을 “1,492”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1,483”을 “1,49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31”을 “232”로 하고, 9등급 “125”를 “126”으로 하며, 8등급 이하 “1,084”를 “1,091”로 한다.

별표 7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외교부 본부 정원표(제56조제1항 관련)	
총계	938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2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	1
4급 상당 이하	4
일반직 계	228
4급 이하	225
전문경력관	3
외무공무원 계	702
14등급	1
고위공무원단	4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1
9등급	10
9등급 또는 3급·4급	2
8등급 이하	646

대한민국재외공관 한시정원표(제63조 관련)

1. 제63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총계	1
----	---

외무공무원 계 1

8등급 이하 1

2. 제63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2
----	---

외무공무원 계 2

8등급 이하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행	개정안
제63조(한시정원) ① <u>중동 지역 농산업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 진출 관련 외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7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을 공 관에 둔다.</u>	제63조(한시정원) <u><삭 제></u>	제63조(한시정원) <u><삭 제></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 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 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외교부에 둔다.	<u><삭 제></u>	<u><삭 제></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 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 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 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 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83</u>	<u>1,492</u>	+9
외무공무원 계	<u>1,483</u>	<u>1,492</u>	+9
·	·	·	
고위공무원단	<u>231</u>	<u>232</u>	+1
·	·	·	
·	·	·	
9등급	<u>125</u>	<u>126</u>	+1
8등급 이하	<u>1,084</u>	<u>1,091</u>	+7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3